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70584 번 호

제출연월일: 2018. 10. 31.

제 출 자:양주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양주시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·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의 대상자 선정 및 취소 시 양주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적시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

나. 법제처 권고사항 반영

○ 「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」 조례 제3조(심의·결정사항) 제2항에 대한 삭제 권고에 따라 개별 조례 정비

- 〈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〉

제3조(심의·결정사항) 제2항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시 단위의 위원회·심사위원회·심의회·추진위원회·협의회 등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아니한 경우의 그 소관사항

2. 주요내용

가. 명예시민 결정(안 제3조)

조항	현 행	개 정(안)
제3조	○ 명예시민 선정 시 <u>양주시</u>	○ 명예시민 선정 시 <u>양주시</u>
(명예시민	<u>시정조정위원회</u> 의 심의·의	<u>공적심사위원회</u> 심의·의결
결정) 제1항	결을 ~~	을 ~~
제3조	○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자	○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자
(명예시민	할 경우 <mark>시정조정위원회</mark> 의	할 경우 <mark>공적심사위원회</mark> 의
결정) 제2항	심의·의결을 생략할 수 있음	심의·의결을 생략할 수 있음

나. 명예시민 선정취소(안 제7조)

조항	현	행	개	정 (안)
제7조 (명예시민 선정취소)	○ 명예시민 / 하는 행위를 ³ <mark>조정위원회</mark> 의 거쳐 취소할 ⁴	심의·의결을	○ 명예시민 하는 행위를 <mark>심사위원회</mark> 거쳐 취소힐	· 한 경우 <u>공적</u> 의 심의·의결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 : 2018. 8. 28. ~ 9. 17. (20일간)

가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2) 부서협의

가) 협의기간 : 2018. 8. 20. ~ 8. 22. (3일간)

나) 협의결과

- 규제사전심사 : 해당없음

-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-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

3) 도 관련부서 : 해당없음

양주시 조례 제 호

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1항 중 "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(이하 "시정조정위원회")의 심의·의결을 거치고"를 "양주시 공적심사위원회(이하 "공적심사위원회)의 심의·의결을 거치고"로 한다.

제3조 제2항 중 "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"를 "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"로 한다.

제7조 중 "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"를 "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담당관·과·소		자치행정과	
٥١	담당관·과·소장 직위·성명	자치행정과장 김 용 훈	
입 안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자치행정팀장 박 상 천	
자	담당자 성명(전화)	지방행정주사 이용명(8082-5212)	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명예시민 결정) ① 시장이 명 예시민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별제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적	제3조(명예시민 결정) ①
조서를 작성하여 양주시 시정조정 위원회(이하 "시정조정위원회"라 한다.)의 심의·의결을 거치고, 그 결과를 양주시의회(이하 "시의회" 라 한다.)에 통보한다.	양주시 공적심사 위원회(이하 "공적심사위원회"라 한다.)
제3조(명예시민 결정) ② 시장은 우호 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양주시(이하 "시"라 한다)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 및 제2조 제5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.	제3조(명예시민 결정) ②
제7조(명예시민 선정취소) 시장은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자가 선정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 정조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.	제7조(명예시민 선정취소)

붙임 1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○ 「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

붙임 2

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

■ 입법예고결과 요약서

의견제출자	제출의견	조치내용
	"의견 없음"	

붙임 3

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

□ 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

협의부서	협의내용	조치내용
○기획예산과	○규제사전심사 - 의견없음	○ 해당없음
○여성보육과	○성별영향평가 - 의견없음	○ 해당없음
○감사담당관	○부패영향평가 - 원안동의	○ 해당없음

참고 1

관계법령

□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주민의 권리) ①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받을 권리를 가진다.

②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(이하 "지방선거"라 한다)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참고 2

현행 자치법규

□ 「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」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양주시 명예시민(이하 "명예시민"이라 한다)선정 및 "양주시 명예시민증서"(이하 "명예시민증서"라 한다)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예시민 선정) 양주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.)은 외국인·재외동포 및 타 지역의 인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시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.

- 1.국내외적으로 양주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정에 적극 협력한 자
- 2.문화·예술·체육·과학·기술·경제·홍보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기여할 자.
- 3.자원봉사 등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시민화합에 기여한 자.
- 4.지역개발을 위한 직·간접 투자와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자.
- 5.관내 주요기관장 및 대대장급 이상의 퇴직 및 전출자
- 6.시의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자
- 7.그밖에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- 제3조(명예시민 결정) ① 시장이 명예시민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(이하 "시정조정위원 회"라 한다.)의 심의·의결을 거치고, 그 결과를 양주시의회(이하 "시의회"라 한다.)에 통보한다.

- ② 시장은 우호 증진 또는 그밖의 목적으로 양주시(이하 "시"라 한다)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 및 제2조제5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외국 귀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1.외국 국가 워수
 - 2.외국 자매 도시의 장
- 제4조(선정 및 수여 시기) 명예시민 선정 및 수여는 주요 행사,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, 퇴직 등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수여한다.
- 제5조(명예시민증서 등 수여) ①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는 별표 1에 따른 "명예시민증서" 와 별표 2에 따른 "명예시민증"을 수여한다.
 - ② 타 지역의 인사에게는 별표 3에 따른 "명예시민증서"와 별표 4에 따른 "명예시민증"을 수여한다.
 - ③ 시장은 "명예시민증서"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.
- 제6조(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등) ①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자는 「지방자치법」제13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가지며, 「양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」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
 - ② 명예시민증서 수여자에 대한 예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문화행사, 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에의 초청
 - 2.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빙
 - 3.신문, 시정 홍보지,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

- 4.시장 명의의 연하장 발송
- 5.시정 홍보책자 및 시정 홍보지등의 배포
- 제7조(명예시민 선정취소) 시장은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자가 선정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.
- 제8조(기록유지) 명예시민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명예시민 수여 및 취소 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생략